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주요결과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심의일자	2024. 2. 27. ~ 3. 5.
건축종별	[]신축, []증축, []대수선, [○]기타(건축물 해체허가 적정성 검토)		
건축주	현대○○○○		
대지현황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지번 : 162번지	관련지번 : 79필지	
	대지면적 : 430,407㎡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 38,457.72㎡	건폐율 : 8.93%	층수 지하 : / 지상 : 2층
	주용도 : 공장	구조 : 일반철골구조	세대수(호)/동수 : 가구 / 1동
	최고높이 : 11m	용적률 : 8.80%	연면적 : 37,883.91㎡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심의내용	종합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철거 계획서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 구조가 철골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압쇄기로 해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빔 컷터와 압쇄기로 병행하여 철거 한다라고 명시하여 주시고 빔 컷터(일명 : 웨어)만 가지고 철거가 안 되는 것은 예측하여 산소절단공에 의한 철거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검사기준(허용범위)는 해체작업자 및 감리자가 공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항목 또는 p. 로 표기할 것 3. p.79 - 굴삭기의 최대작업높이는 구조물높이 +3.0m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재검토할 것 4. 비계, 분진망, 낙하물방지망 등 가시시설 설치공정도 해체감리자의 감리 대상으로 감리 감독하에 안전한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표상 감리기간의 표기와 감리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5. 상층부 구조물 철거에 해체공정에 대한 사항은 기술이 되어 있으나 기초등 철근콘크리트 철거에 대한 내용은 해체작업에 대한 장비 사용방법, 위치, 살수위치 등드에 대한 사항이 기술된 도서가 없는바 관련도서 보완이 필요해 보임 6. 공정표상 해체작업에 대한 일별 상세한 작업공정과 작업내용, 작업위치, 장비 등이 기술되어서 해당 작업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고정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는 공정표가 필요해 보임 7. 건축물 해체 및 폐기물 운반 작업시 공장 내부도로 상의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점용면적을 최소화할 것 8. 해체계획서 p.138~139에 제시한 해체공사시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유도원 및 교통안내원 배치,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

심의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재검토 의결 [] 부결</p> <p>※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